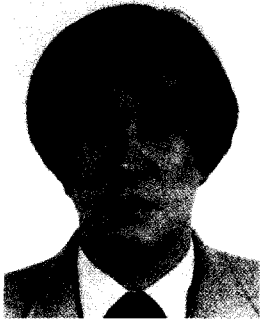


일본 주류산업의 동향



이 상 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위원)

I. 머리말

올해 상반기(1-5월) 국내 전체 주류출고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15.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8.7%의 출고량 감소를 나타낸 청주를 제외하고는 맥주, 소주, 위스키, 기타 주류 등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순금가루를 혼합한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 백세주 등의 전통주 판매량의 급증, 흑맥주의 판매호조, 다른 해에 비해 일찍 시작되고 길었던 여름 등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내 소주의 일본진출은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나 복잡한 일본의 유통구조 등을 감안하면 이는 경이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에 현지법인인 진로재팬을 설립하고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센다이(仙台) 등에 유통망을 확충한 진로소주가 일본에 수출한 소주의 물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무려 58%나 급증하였고, 두산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해양조는 지난 4월부터 아사히맥주와 공동으로 소주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일본내의 우리나라 소주의 판매량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目 次 ■

- I. 머리말
- II.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III. 주세관련 현황
- IV. 주류판매 현황
- V. 주류소비 현황
- VI. 주류수입 현황
- VII. 맺음말

약 10여 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의 김치, 불고기, 갈비탕 등의 전통음식이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 동경 등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이후에 한일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한국 전통음식이 스태미나를 증진시키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일본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산 소주의 판매량도 급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해외교민, 해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이외에는 해외시장의 진출과는 거의 무관했고 최근의 주류시장의 개방, 주세율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 주류업계에 있어서 한국산 소주의 일본 시장의 진출은 해외시장의 개척에 새로운 전

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 2월 일본 국세청에서 발표한『술의 안내(酒のしおり)』 및 주류관련 전문잡지, 주류관련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현재 일본의 주류산업이 어떠한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별 판매량의 추이, 주세제도의 현황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우리나라 주류업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일본의 주류는 일본 주세법 제2조에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희석하여 알코올 함량이 1도 이상의 음료로 만들 수 있는 것(알코올분

(표 1)일본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종 류	품 목	주 요 제 조 방 법
청 주	-	※ 쌀·쌀국·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거른 것 ※ 쌀·쌀국·물·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을 원료로 발효시켜 거른 것
합 성 청 주	-	※ 알코올·소주·포도당 등을 원료로 제조한 주류로서 청주에 유사한 것
소 주	소 주 갑 류	※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36도 미만의 것
	소 주 을 류	※ 알코올 함유물을 상기 이외의 증류기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45도 미만의 것
미 린 맥 주	-	※ 쌀·쌀국에 소주 또는 알코올·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을 첨가하여 거른 것 ※ 맥아·호프·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
과 실 주 류	과 실 주	※ 과실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
	감 미 과 실 주	※ 과실주에 당류·전분 등을 혼화시킨 것
위 스 키 류	위 스 키	※ 발아시킨 곡류·물을 원료로 당화시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시킨 것
	브 랜 디	※ 과실·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시킨 것
스 피 릿 츠 류	스 피 릿 츠	※ 청주부터 위스키류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주류로서 액기스분이 2도 미만의 것
	원 료 용 알 코 올	※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시킨 것으로서 알코올분 45도를 넘는 것
리 큐 르 류	-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로 액기스분이 2도 이상인 것
잡 주	발 포 주	※맥아를 원료의 일부분으로 한 주류로서 발포성을 가진 것
	분 말 주	※용해한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의 음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분말상의 것
	기 타 잡 주	※청주부터 분말주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

90도 이상의 알코올 중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의 원료로 사용하여 그 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 이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용해시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분말상의 것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총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주세법 제3조에 『알코올분』(온도 15°C 때 原容量 100分 중에 함유하는 에틸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과 『엑기스분』(온도 15°C 때 原用量 100입방센티미터 중에 함유하는 불휘발성 성분의 그램수를 말한다) 먼저 정의한 후, 알코올분 및 원료, 첨가물, 제조방법, 엑기스분, 성상 등에 따라 청주, 합성청주, 소주, 미린, 맥주, 과실주류, 위스키류, 스피릿츠류, 리큐르류, 잡주 등의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표 1 참조> 아울러 『밀술』, 『술덧』, 『국』, 『보세지역』등의 용어도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10가지 주류 중 소주, 과실주류, 위스키류, 스피릿츠류, 잡주에 대한 세세 품목과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하는 것 및 분말주의 수량계산에 관한 것이 일본 주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III. 주세관련 현황

1. 주세제도

1) 주세법

1871년 7월 제정된『清酒, 濁酒, 醬油釀造鑑札收與並收稅法』이 일본 최초의 주류관련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주세법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 것은 1896년 제정된 『酒造稅法』과 1901년의 『酒精 및 酒精含有飲料稅法』 및 『麥酒稅法』, 1905년의『酒造組合法』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1938년에 주류판매업이 면허제로 되고 1939년부터 주류가격이 통제가격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1949년에 일본 국세청이 발족된 후, 1953년 2월에 현행 『酒稅法』과 『酒稅의 保소 및 酒類業組合等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후에도 현재까지 1960년에 통제가격의 완전폐지 및 기준판매가격제도의 도입, 1962년의 주세법의 대폭 개정(주류 종류분류의 개정 등), 1964년의 기준판매가격의 폐지, 1989년의 주세법의 대폭 개정(級別制度의 폐지, 주류종류간의 세율 조정 등), 1994년의 맥주 제조면허에 관한 최저 제조수량기준의 하향조정, 1997년 및 1998년에 걸친 소주 등의 증류주에 관한 세율 조정, 2000년에는 미성년자음주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표 2 참조).

2) 주류관련 단체

주류관련 단체에 관한 것은 일본 주세법의 변천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 차례에 걸쳐 변화가 있었다. 즉, 1893년 『주정영업세법』, 1905년 『주조조합법』, 1943년 『주류업 단체법』의 제정과 1947년 『주류업조합법』으로의 개정, 1948년 『주류업조합법』의 폐지, 국세청 발족(1949년)후, 1953년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제도의 변천이 있었다.

현재 국세청 소관 하에는 주류조합법에 근거한 단체로 日本酒造組合中央會, 日本蒸溜酒酒造組合, 麥酒酒造組合, 日本洋酒酒造組合, 全國都賣酒販組合中央會, 全國小賣酒販組合中央會가 있으며, 임의단체로는 日本洋酒輸入協會, 日本와이너리(winery)協會, 日本味淋協會, 日本地麥酒釀造者協會 등이 있다(표 3 참조).

국세청 산하의 東京國稅局, 大阪國稅局, 名古屋國稅局 등의 12개 國稅局 소관에는 일본

(표 2) 일본 주세제도의 변천

연 도	내 용
1871년 7월	※ 청주, 탁주, 장유 양조 鑑札收與 및 收稅法の 제정
1875년 2월	※ 주류세칙의 제정
1880년 9월	※ 주조세칙의 제정
1893년 4월	※ 주정영업세법의 제정
1896년 3월	※ 주조세법의 제정
1901년 10년	※ 주정 및 주정함유음료 세법의 제정
1901년 12월	※ 맥주세법의 제정
1905년 1월	※ 주조조합법의 제정
1938년 4월	※ 주류판매업이 면허제로 됨
1939년 3월	※ 주류의 가격이 통제가격으로 됨
1940년 3월	※ 주세법의 제정(造石稅, 출고세의 병과)
1941년 11월	※ 주세등의 증징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43년 4월	※ 출고세에 級別차등과세제도를 채용 ※ 주류단체법의 제정
1944년 4월	※ 造石稅의 폐지, 출고세만 부과
1947년 3월	※ 주류업단체법을 주류업조합법으로 개정
1948년 7월	※ 주류업조합법의 폐지
1949년 6월	※ 국세청 발족
1953년 2월	※ 주세법(현행법)의 제정 ※ 주세의 保全 및 주류업조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60년 10월	※ 통제가격의 완전폐지, 기준판매가격제도로 됨
1962년 4월	※ 주세법의 대폭개정(주류의 종류분류의 개정, 從價格制度의 채용, 신고납세 제도의 채용)
1964년 6월	※ 기준판매가격제도의 폐지(자유가격으로 됨)
1967년 6월	※ 등록면허세법의 제정(주류의 제조, 판매업 면허에도 등록면허세를 과세)
1989년 4월	※ 주세법 등의 대폭개정(級別制度의 폐지, 從價格制度의 폐지, 주류 종류간 세율의 조정, 주류의 표시기준제도의 창설)
1994년 4월	※ 주세법의 일부 개정(세부담의 적정화, 맥주의 제조면허에 관한 최저 제조수량기준의 인하)
1997년 10월	※ 주세법의 일부 개정(소주 등 증류주에 관한 세율의 조정)
1998년 5월	※ 주세법의 일부 개정(소주 등 증류주에 관한 세율의 조정)
2000년 12월	※ 주세법의 일부 개정(주류판매면허의 취소이유에「주류판매업자가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의 추가

(표 3) 주류관련 단체의 계통도

	구 분	국제청 소관	국제국 소관	세무서 소관
주류 조합 법에 근거 한 조합	청주/소주을류/미린	日本酒造組合中央會 (全國單位)	酒造組合聯合會 (都道府縣 25組合) 酒造組合 (都道府縣 22組合)	酒造組合 (稅務署單位 176組合)
	합성청주/소주갑류/ 원료용 알코올	日本蒸溜酒酒造組合 (全國單位)		
	맥 주	麥酒酒造組合 (全國單位)		
	과 실 주		山梨縣와인酒造組合 山形縣果實酒酒造組合	
	감미과실주/위스키류/ 스피릿즈/리큐르류/ 기타 잡주	日本洋酒酒造組合 (全國單位)		
	전 주 류 도 매 업	全國都賣酒販造組中央會 (全國單位)	都賣酒販組合 (都道府縣 44組合) 都賣酒販組合 (2府縣單位 1組合) 都賣酒販組合聯合會 (縣單位 1組合)	都賣酒販組合 (稅務署單位 1組合) 都賣酒販組合 (稅務署單位 6組合)
소 매 업	全國小賣酒販造組中央會 (全國單位)	小賣酒販組合 (都道府縣 46組合) 小賣酒販組合 (都單位 1組合)	小都賣酒販組合 (稅務署單位 451組合)	
주요 임의 단체	양 주 수 입	日本洋酒輸入協會 (全國單位)		
	과 실 주	日本와이너리協會 (全國單位)		
	미 린 1 종	日本味淋協會 (全國單位)		
	맥 주	日本地麥酒釀造者協會 (全國單位)		

주조조합중앙회의 주조조합연합회(25개 조합) 및 주조조합(22개 조합)과 전국도매주판조합중앙회의 도매주판조합(45개 조합) 및 도매주판조합연합회(1조합)과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의 소매주판조합(47개 조합)과 지방조직만이 있는 山梨縣와인組合 및 山形縣果實酒酒造組合 등이 있다.

또한, 國稅局 산하의 세무서 소관에는 일본 주조조합중앙회의 주조조합 (176개 조합)과 전국도매주판조합중앙회의 도매주판조합(1개 조합)과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의 소매주판조합(451개 조합)이 속해 있다.

2. 주세 추이

일본의 주세는 전체 국세 중에서 1980년대에는 약 5%정도였지만 일본경제가 정체기에 접어든 1990년부터는 전체 국세의 약 3%대에 머무르고 있다(표 4 참조). 국세수입은 1990년대에도 정체 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세의 경우는 주세율 조정, 주류 소비량의 정체

등의 원인으로 198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수년 사이의 일본 국세를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약 6:4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세의 약 40%를 점하는 간접세 중에서 소비세, 휘발유세 등과 함께 아직도 주요 稅收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 참조)

주세 과세액 기준으로 1989년부터 1999년 사이의 최근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1989년에는 맥주가 약 70%, 청주 약 10%, 위스키류 약 14%, 소주 약 2%, 리큐르류 약 0.6%, 과일주 약 0.4%를 점하고 있으며 발포주의 과세액은 1 억엔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10년 후인 1999년에도 맥주가 약 69%, 청주 약 7%로 여전히 1, 2위를 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소주와 발포주는 소비량이 급증하여 약 8.6%와 약 8.1%로 각각 3, 4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위스키류 약 3%, 리큐르류 약 2%, 과일주류 약 0.8% 순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10년 사이에 일본경제

(표 4) 주세수입의 추이

연 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¹⁾	2001년 ²⁾	
국세수입	총액 (억 엔)	283,688	391,502	627,798	549,630	552,261	556,007	511,977	492,139	518,980	527,675
	전년대비 증가율	113.7%	106.5%	109.9%	101.8%	100.5%	100.7%	92.1%	96.1%	105.5%	101.7%
주세수입	총액 (억 엔)	14,243	19,315	19,350	20,610	20,707	19,619	18,983	18,717	18,600	18,230
	전년대비 증가율	97.5%	103.8%	108.3%	97.6%	100.5%	94.7%	96.8%	98.6%	99.4%	98.0%
	대국세 점유율	5.0%	4.9%	3.1%	3.8%	3.8%	3.5%	3.7%	3.8%	3.6%	3.5%

주: 1)은 2000년도 보정예산액임.
2)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임.

(표 5) 일본 국세중 주세의 비중

구 분	1996년		1999년		2000년 ¹⁾		2001년 ²⁾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 직접세 등	360,473	65.3	281,289	57.2	315,350	60.8	320,090	60.7
▷ 소득세	189,649	34.4	154,468	31.4	190,470	36.7	185,720	35.2
▷ 법인세	144,833	26.2	107,951	21.9	108,160	20.8	118,390	22.4
▷ 기타	25,991	4.7	18,870	3.9	16,720	3.3	15,980	3.1
※ 간접세 등	191,788	34.7	210,850	42.8	203,630	39.2	207,585	39.3
▶ 주세	20,707	3.7	18,717	3.8	18,600	3.6	18,230	3.5
▷ 소비세	60,568	11.0	104,471	21.2	98,560	19.2	101,290	19.2
▷ 휘발류세	19,152	3.5	20,707	4.2	20,780	4.0	21,210	4.0
▷ 관세	10,240	1.8	8,102	1.6	7,300	1.4	8,140	1.5
▷ 기타	81,121	14.7	58,853	12.0	58,390	11.0	58,715	11.1
합 계	552,261	100.0	492,139	100.0	518,980	100.0	527,675	100.0

주: 1)은 2000년도 보정예산액임.

2)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임.

(표 6) 주세 과세액 추이

구 분	1989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금 액 (억엔)	구성비 (%)	
청 주	1,963	10.58	1,614	7.61	1,508	7.63	1,412	7.43	1,365	7.29	
소 주	감류	249	1.34	510	2.40	693	3.51	918	4.83	965	5.15
	을류	139	0.75	262	1.21	391	1.98	551	2.90	652	3.48
	계	389	2.10	772	3.64	1,085	5.49	1,470	7.73	1,616	8.63
맥 주	13,150	70.90	16,327	76.97	14,817	74.94	13,661	71.89	12,898	68.90	
과실주류	과실주	63	0.34	78	0.37	148	0.75	203	1.07	152	0.81
	감미과실주	13	0.07	12	0.06	16	0.08	16	0.08	16	0.09
	계	76	0.41	90	0.42	164	0.83	219	1.15	167	0.89
위스키류	위스키	2,294	12.37	1,635	7.71	1,032	5.22	554	2.92	516	2.76
	브랜드	375	2.02	347	1.64	205	1.04	103	0.54	91	0.49
	계	2,669	14.39	1,982	9.35	1,238	6.26	657	3.46	607	3.24
리큐르류	111	0.60	197	0.93	267	1.35	295	1.55	373	1.99	
잡 주	발포주	0	0.00	46	0.22	523	2.65	1,133	5.96	1,516	8.10
	기타	8	0.04	11	0.05	12	0.06	11	0.06	12	0.06
	계	8	0.04	57	0.27	535	2.71	1,144	6.02	1,529	8.17
기 타	183	0.98	172	0.81	157	0.79	147	0.77	166	0.89	
합 계	18,549	100.00	21,211	100.00	19,771	100.00	19,005	100.00	18,721	100.00	

(표 7) 주세율 일람표

종 류		알코올류		1kl당 세금		
청 주		※15도 이상 16도 미만 ※16도 이상 ※8도 이상 ※8도 미만		▷140,500엔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300엔 가산 ▷1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9,300엔 감산 ▷74,910엔		
합 성 청 주		※15도 이상 16도 미만 ※16도 이상 ※8도 이상 ※8도 미만		▷79,300엔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290엔 가산 ▷1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5,290엔 감산 ▷42,270엔		
소 주	소 주 갑 류	※25도 이상 26도 미만 ※26도 이상 ※21도 이상 25도 미만 ※21도 미만		▷248,100엔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2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9,924엔 감산 ▷198,480엔		
	소 주 을 류	※25도 이상 26도 미만 ※26도 이상 ※21도 이상 25도 미만 ※21도 미만		▷248,100엔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2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9,924엔 감산 ▷198,480엔		
미 린	엑기스분이 16도 이상의 것		※13.5도 이상 14.5도 미만 ※14.5도 이상 23도 미만 ※8도 이상 13.5도 미만 ※8도 미만	▷21,600엔 ▷13.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0엔 가산 ▷13.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1,600엔 감산 ▷12,000엔		
	엑 기 스 분 이 16 도 미 만 의 것	알코올분이 23도 미만 또는 엑기스분이 8도 이상인 것	※13.5도 이상 14.5도 미만 ※14.5도 이상 23도 미만 ※8도 이상 13.5도 미만 ※8도 미만	▷21,600엔 ▷13.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0엔 가산 ▷13.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1,600엔 감산 ▷12,000엔		
	기 타		※25도 이상 26도 미만 ※26도 이상 ※8도 이상 25도 미만 ※8도 미만	▷248,100엔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2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9,924엔 감산 ▷79,392엔		
맥 주		-		▷222,000엔		
과 실 주 류	과 실 주	-		▷56,500엔		
	감미과실주	※13도 미만 ※13도 이상		▷98,600엔 ▷12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8,220엔 가산		
위 스키 류		※40도 이상 41도 미만 ※41도 이상 ※38도 이상 40도 미만 ※38도 미만		▷409,000엔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0,225엔 가산 ▷40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10,225엔 감산 ▷378,325엔		
스 피릿 류		※38도 미만 ※38도 이상		▷367,188엔 ▷37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리 큐르 류		※13도 미만 ※13도 이상		▷119,088엔 ▷12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잡 주	발 포 주		※맥아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 ※맥아의 사용 비율이 25%이상 50% 미만 ※기타	▷222,000엔 ▷152,700엔 ▷105,000엔		
	분 말 주		-	▷320,500엔		
	기 타 잡 주	성 상 이 미 린 에 유 사 한 것	엑기스분이 16도 이상의 것	※13.5도 이상 14.5도 미만 ※14.5도 이상 23도 미만 ※8도 이상 13.5도 미만 ※8도 미만	▷21,600엔 ▷13.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0엔 가산 ▷13.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1,600엔 감산 ▷12,000엔	
			엑 기 스 분 이 16 도 미 만 의 것	알코올분이 23도 미만 또는 엑기스분이 8도 이상인 것	※13.5도 이상 14.5도 미만 ※14.5도 이상 23도 미만 ※8도 이상 13.5도 미만 ※8도 미만	▷21,600엔 ▷13.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600엔 가산 ▷13.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1,600엔 감산 ▷12,000엔
			기 타	※25도 이상 26도 미만 ※26도 이상 ※8도 이상 25도 미만 ※8도 미만	▷248,100엔 ▷2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924엔 가산 ▷25도에 미달하는 1도마다 9,924엔 감산 ▷79,392엔	
기 타		※13도 미만 ※13도 이상		▷98,600엔 ▷12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8,220엔 가산		

불황의 여파로 주류 소비패턴이 저알코올, 저가격, 건강 등의 3가지 키워드로 압축되어 발포주, 소주, 와인의 소비량이 급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년 사이에 주세율이 약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위스키류의 주세율(이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도 주세 과세액 변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3. 주세율

일본의 주세율은 청주류가 8-16도, 소주류가 21-26도, 미린이 8-23도, 감미과실주가 13도, 위스키류가 38-41도, 스피릿츠류가 38도, 리큐

르류가 13도의 알코올분을 기준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맥주와 과실주는 기준 알코올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표 7 참조).

그리고 주세율 일람표 외에 알코올분이 13도 미만(리큐르류는 12도 미만)의 것은 해당주류에 대한 세율은 『해당주류의 기준세율/해당주류의 기준 알코올분×해당주류의 알코올분의 도수(8도 미만의 경우는 8도)』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표 8 참조)

4. 주세부담률

일본의 주요 주류별 주세 부담율 추이를 보

(표 8)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주세율

주 류		기 준 알 코 올(도)	기 준 세 율(엔)
종 류	품 목		
소 주	-	25	248,100
과 실 주 ¹⁾	과 실 주	12	56,500
	감 미 과 실 주	12	98,600
위 스 키 류	-	40	409,000
스 피 릿 츠 류	스 피 릿 츠	37	367,188
리 큐 르 류	-	12	119,088
잡 주 ¹⁾	기 타 잡 주 (기타 잡주중의 기타)	12	98,600

주: 1)은 발포성을 가진 것에 한함.

(표 9) 주요 주류별 주세부담율 추이

구 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¹⁾	1992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청주(구 1급 클래스) (18%)	77.1	58.5	35.3	24.1	20.7	16.4	16.3	16.3	17.9	17.9
소주(25도) (18%)	69.7	37.0	19.9	10.9	21.3	21.3	25.5	25.5	31.7	35.8
맥 주(큰병)	77.4	56.1	47.9	42.5	44.1	44.1	45.5	45.5	46.5	46.5
위 스 키 ²⁾	64.0	52.7	46.2	47.3	41.3	41.3	41.3	39.5	27.6	22.8

주: 1) 1989년 이후의 주세부담율은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음.

2) 1994년까지는 알코올분 『43도』, 1996년 이후에는 알코올분 『40도』로 계산함.

(표 10) 주요 주류의 주세 부담율표(2000년)

구 분	용 량 (ml)	알코올분 (%)	소매가격 ¹⁾ (엔)	주세액 (엔)	소비세액 (엔)	주 세 액 ²⁾ 분담율(%)
청 주 (구1급 클래스)	1,800	15.0	1,835	252.90	91.75	17.9
소 주	1,800	25.0	1,370	446.58	68.50	35.8
갑 류	1,800	25.0	1,564	446.58	78.20	32.0
을 류	1,800	25.0	1,564	446.58	78.20	32.0
맥 주	633	5.0	321	140.52	16.05	46.5
위 스 키	700	40.0	1,510	286.30	75.50	22.8
발 포 주	350	5.5	145	36.75	7.25	28.9

주: 1) 2000년 10월 기준 희망소매가격(소비세 제외)이며, 맥주의 소매가격에는 용기보증금(5엔)이 포함된 가격임.

2) 주세액+소비세액이 소매가격+소비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 11) 주요국별맥주의 세부담율 비교

국 명	소매가격(엔)	주세부담율(%)	소비세 등 부담율(%)	소매가격중 세부담율(%)
일 본	337	41.7	4.8	46.5
프 랑 스	83	10.1	16.5	26.6
독 일	102	6.0	16.1	22.1
미 국	161	10.0	7.4	17.4
영 국	235	21.0	14.9	35.9

면 1950년에는 청주, 소주갑류, 맥주, 위스키 등이 64-77% 사이로 주류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년 후인 1970년에는 맥주가 약 48%로 주세 부담율이 가장 높고 위스키 약 46%, 청주 약 35%, 소주갑류 약 20% 순이었다(표 9 참조).

맥주의 경우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세 부담율이 40%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유일한 주류이고, 청주의 경우는 1980-1990년 사이는 20%대, 이후에는 10%대로 주세 부담율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위스키는 1970-1994년까지 거의 40%가 유지되다가 1997년부터 주세율의 대폭조정에 의해 초기 수준의 거의 절반인 약 23%의 주세 부담율을 나

타내고 있으며, 소주갑류는 1970-1980년 사이에 약 10%까지 주세 부담율이 낮아졌으나 1990년대부터는 다시 20%대로 상향조정되고 현재는 무려 약 36%에 육박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주요 주류별 주세 부담율을 비교해 보면, 맥주가 약 4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소주갑류 약 36%, 소주을류 약 32%, 발포주 약 29%, 위스키 약 23% 순이며, 청주는 약 18%로 유일하게 10%대의 주세 부담율을 나타내고 있다(표 10 참조).

일본 맥주의 주세 부담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 맥주의 주세 부담율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주세 부담율이 낮은 미국의 약 2.7배, 가장 높은 영국의 약

(표 12) 주류 판매 추이^{1),2)}

구 분	1989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청 주	1,344,966	15.75	1,256,849	13.03	1,122,188	11.93	1,052,347	11.13	1,029,854	10.78	
소 주	감류	287,023	3.36	357,507	3.71	400,829	4.26	392,753	4.15	404,644	4.24
	을류	204,854	2.40	248,887	2.58	291,313	3.10	296,096	3.13	316,508	3.31
	계	491,870	5.76	606,402	6.29	692,139	7.36	688,851	7.29	721,153	7.55
맥 주	6,060,480	70.96	7,056,792	73.18	6,329,706	67.26	5,857,342	61.95	5,508,143	57.65	
과실주류	과실주	112,777	1.32	122,904	1.27	224,774	2.39	297,883	3.15	277,824	2.91
	감과과실주	17,254	0.20	12,971	0.13	14,012	0.15	15,232	0.16	15,226	0.16
	계	130,022	1.52	135,882	1.41	238,787	2.54	313,116	3.31	293,046	3.07
위스키류	위스키	232,677	2.72	164,816	1.71	134,236	1.43	138,137	1.46	131,850	1.38
	브랜드	43,335	0.51	40,138	0.42	29,334	0.31	27,418	0.29	25,260	0.26
	계	276,017	3.23	204,939	2.13	163,575	1.74	165,552	1.75	157,100	1.64
리큐르류	89,051	1.04	192,657	2.00	244,161	2.59	262,200	2.77	343,861	3.60	
잡 주	발포주	445	0.01	16,855	0.17	431,420	4.58	925,563	9.79	1,277,906	13.38
	기타	7,158	0.08	12,368	0.13	17,158	0.18	18,672	0.20	19,335	0.20
	계	7,621	0.09	29,226	0.30	448,576	4.77	944,236	9.99	1,297,232	13.58
기 타	140,468	1.65	160,756	1.67	171,059	1.81	171,912	1.81	203,186	2.13	
합 계	8,540,495	100.00	9,643,503	100.00	9,410,191	100.00	9,455,556	100.00	9,553,845	100.00	

주: 1) 본 자료는 주로 일본의 『국제청통계연보세』에 의함.

2) 주류판매수량은 주류소매업자의 판매수량외에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직판한 수량도 포함한 것임

1.5배에 달하고 있어 일본의 주세정책은 주류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맥주에 비중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IV. 주류판매 현황

1. 주류판매 추이

1989년 기준으로 전체 주류판매량에서 주요 주류별 점유율을 보면 맥주가 약 71%로 단연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어 청주 약 16%, 소주 약 6%, 위스키류 약 3%, 과실주류 약 2% 순이었다(표 12 참조).

10년 후인 1999년 기준으로는 맥주와 청주가 점유율의 순위에 있어서 여전히 1,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점유율이 각각 약 58%와 약 11%로 10년 전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약 20%, 약 30%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위스키류도 주세율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약 절반 가량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주는 판매량이 1989에 비해 약 1.5배, 점유율도 약 1.3배 증가하였으며, 과실주류중 과실주는 판매량이 약 2.5배, 점유율은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포주의 경우는 판매량이 무려 약 2,870배, 시장

(표 13) 縣別 주류 판매액(1999년 도매업 기준)

지 역	맥 주		양 주		청 주		소 주 등		합 계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금 액 (백만원)	구성비 (%)
東 京	776,180	23.8	337,671	32.8	234,669	25.3	293,872	39.0	1,642,392	27.5
大 阪	364,808	11.2	151,421	14.7	85,902	9.3	68,841	9.1	670,972	11.2
愛 知	198,560	6.1	60,415	5.9	41,944	4.5	23,858	3.2	324,777	5.4
北 海 道	171,766	5.3	59,716	5.8	32,478	3.5	24,759	3.3	288,719	4.8
福 岡	122,036	3.7	26,760	2.6	23,565	2.5	37,387	5.0	209,748	3.5
兵 庫	111,513	3.4	27,519	2.7	31,010	3.3	14,170	.9	184,212	3.1
기 타	1,519,811	46.5	367,134	35.5	478,060	51.6	290,235	38.5	2,655,240	44.5
합 계	3,264,674	100.0	1,030,636	100.0	927,628	100.0	753,122	100.0	5,976,060	100.0

점유율도 약 1,330배 증가하여 오랫동안 2위 자리를 고수해 오던 청주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2. 지역별 주류판매 현황

도매업매출(1999년) 기준으로 지역별 주류 판매 현황을 분석해 보면, 東京지역이 전체 판매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阪지역이 약 11%, 愛知지역이 약 5%, 北海道 지역이 약 4.8%, 福岡지역이 약 3.5%, 兵庫지역이 약 3.1%로 전국 판매량의 약 55% 정도가 상위 6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표 13 참조).

전체 주류판매액 중에서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 주류에서 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도시인 東京, 大阪지역과 추운 지방인 北海道지역만이 양주 판매량이 지역 평균판매량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東京지역의 경우는 맥주 판매량이 지역 평균판매량보다 낮은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福岡지역과 兵庫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 평균판매량보다 양주 판매량은

낮으나 맥주 판매량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 평균판매량을 웃돌고 있다. 그리고 소주의 경우는 東京지역이 지역 평균판매량을 무려 10% 이상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 소주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구주지방에 가까운 福岡지역 또한 소주 판매량이 지역 평균판매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3 참조).

한편, 주류판매 도매업체 중 연간매출액이 1999년 기준으로 1000억엔을 상회하는 업체는 11개인데, 이중 1, 2위를 기록한 國分(株), (株)明治屋 등 5개 업체가 東京, 伊藤忠食品(株) 등 3개 업체가 大阪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福岡市, 金澤市, 札幌市에 각각 1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4 참조).

3. 주류 자동판매기 현황

일본 국내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주류자동판매기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의 음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994년 10월 중앙주류심의회에서는 미성년

(표 14) 주요 주류도매업 판매실적(1999년1)

(단위: 백만원)

순위	회 사 명	소 재 지	매 출 액	신 고 이 익	이 익 율 (%)
1	國分(株)	中央區	964,061	4,526	0.5
2	(株)明治屋	中央區	490,029	-	-
3	伊藤忠食品(株)	大阪市	468,025	5,523	1.2
4	日本酒類販賣(株)	中央區	385,355	2,269	0.6
5	야마에쿠야(株)	福岡市	219,964	3,176	1.4
6	中泉(株)	中央區	194,535	-	-
7	(株)祭原	東大阪市	137,000	237	0.2
8	카나칸(株)	金澤市	124,950	1,507	1.2
9	(株)廣屋	中央區	121,560	382	0.3
10	三陽物産(株)	大阪市	111,696	-	-
11	北海道酒類販賣(株)	札幌市	103,626	111	0.1

주: 1) 본 자료는 일본의『酒類都賣業年鑑-2001年版』에 의한 것임.

(표 15) 주류자동판매기 설치상황

구 분	설치대수 (1996년 3월말 기준)	설 치	대 수(개 량 형 이 외)					철폐예정 대수 감안		개량형 주류판매 기의 설치 상황
			잔존율 B/A(%)	철폐예정상황			계 (C+D+F)	G (B+F)	잔존율 B/A(%)	
				철폐예정 (C)	개량예정 (D)	미가동 (E)				
東京局管内	30.5	17.7	58	3.5	2.6	2.2	8.3	9.4	31	1.1
關信局管内	23.1	14.9	65	2.2	2.6	1.0	5.8	9.1	39	1.0
大阪局管内	41.0	28.8	70	2.6	4.7	0.6	7.9	20.9	51	1.0
札幌局管内	4.0	1.4	35	0.6	0.2	0.1	0.9	0.5	13	0.2
仙台局管内	12.1	6.3	52	1.7	0.8	1.5	4.0	2.3	19	0.5
名古屋局管内	19.7	13.5	69	2.0	1.2	1.5	4.7	8.8	45	0.3
金澤局管内	5.8	3.8	66	0.9	0.6	0.6	2.1	1.7	29	0.2
廣島局管内	18.6	11.9	64	1.9	1.4	1.2	4.5	7.4	40	0.6
高松局管内	10.6	7.3	69	1.1	0.8	0.7	2.6	4.7	44	0.2
福岡局管内	11.5	7.9	69	1.3	0.9	0.8	3.0	0.9	43	0.2
熊本局管内	8.8	5.4	61	0.9	0.6	1.0	2.5	2.9	33	0.3
沖繩局管内	0.2	0.1	50	0.02	0.01	0.01	0.04	0.06	30	0.02
전 국	185.8	119.0	64	18.9	16.1	11.2	46.2	72.8	39	5.4

여부를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는『對面販賣』가 어려운 옥외용 주류 자동판매기를 기술적으로 개량하여 미성년자의 사용방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다음해 5월에는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는 보다 좋은 음주환경을 형성하고 미성년자 음주방지의 관점에서 현행 옥외용 주류 자동판매기를 2000년 5월까지 철폐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발표하였다.

전국소매주관조합중앙회의 철폐결의가 있는 다음해인 1996년 3월말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종래의 주류 자동판매기가 186년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0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는 종래의 주류 자동판매기가 119대가 잔존하고 있고, 이들 중 철폐예정이거나 개량예정, 미가동인 것이 46대로 파악되었다(표 15 참조). 이에 국세청에서는 완전한 철폐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주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이유에 『주류판매업자가 미성년자 음주금지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

형에 처해진 경우』를 추가하였다.

V. 주류소비 현황

일본의 주류소비는 1989년 성인 1인당 기준으로 연간 95.7l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5년 후인 1994년에는 1인당 주류소비량이 101.6l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96.3l, 1998년에는 95.1l, 1999년에는 96.4l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주류소비량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주류별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에 맥주가 67.9l, 전체 주류소비의 71%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청주가 15.1l, 15.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소주가 5.5l, 5.7%로 3위, 위스키류가 3.1l, 3.2%로 4위 등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인 1999년에도 맥주의 소비량(55.6l, 57.7%) 약 20% 정도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고수하였고 1997년부터 소비가 급증한 발포주에 힘입어 잡주가 13.1l,

(표 16) 성인 1인당 주류 소비량 추이

구 분	1989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수 량 (l)	구성비 (%)	수 량 (l)	구성비 (%)	수 량 (l)	구성비 (%)	수 량 (l)	구성비 (%)	수 량 (l)	구성비 (%)
청 주	15.1	15.8	13.2	13.0	11.5	11.9	10.6	11.1	10.4	10.8
소 주	5.5	5.7	6.4	6.3	7.1	7.4	6.9	7.3	7.3	7.6
맥 주	67.9	71.0	74.4	73.2	64.8	67.3	58.9	61.9	55.6	57.7
과 실 주 류	1.5	1.6	1.4	1.4	2.4	2.5	3.1	3.3	3.0	3.1
위 스 키 류	3.1	3.2	2.2	2.2	1.7	1.8	1.7	1.8	1.6	1.7
리 큐 르 류	1.0	1.0	2.2	2.2	2.5	2.6	2.6	2.7	3.5	3.6
잡 주	0.1	0.1	0.3	0.3	4.6	4.8	9.5	10.0	13.1	13.6
기 타	1.5	1.6	1.5	1.4	1.7	1.7	1.8	1.9	1.9	1.9
합 계	95.7	100.0	101.6	100.0	96.3	100.0	95.1	100.0	96.4	100.0

(표 17) 국별 인구 1인당 알코올음료 소비 추이^{1),2)}

순위 ³⁾	국 명	1996년	1997년	1998년
1	룩셈부르크	11.6	11.4	13.3
2	포르투갈	11.6	11.3	11.2
3	프랑스	11.2	10.9	10.8
4	아일랜드	9.9	10.5	10.8
5	독일	11.0	10.8	10.6
6	체코	10.0	10.1	10.2
7	스페인	9.3	10.2	10.1
8	덴마크	10.0	9.9	9.5
9	루마니아	8.9	9.2	9.5
10	항가리	10.3	10.1	9.4
28	일본	6.7	6.4	6.5
42	중국	3.7	3.8	3.8
44	대만	2.7	2.9	3.0

주: 1) 본 자료는 네덜란드 蒸溜酒生産局에서 조사한 자료임.

2) 알코올분 100%로 환산한 수치임.

3) 1998년 수량을 기준으로 한 순위임.

(표 18) 주요 주류별 수입 점유율 추이

(단위: kl)

구	분	소주갑류	맥주	과실주	위스키	발포주	기타	합계
1989년	국내(A)	206,317	6,249,523	70,642	168,264	63	1,864,570	8,559,379
	수입(B)	2,609	70,872	66,660	53,809	88	35,035	229,073
	B/A+B(%)	1.2	1.1	48.5	24.2	58.3	1.8	2.6
1994년	국내(A)	329,855	7,085,713	63,988	126,094	26,438	1,940,320	9,572,408
	수입(B)	11,953	327,061	81,702	42,391	4,626	30,921	498,654
	B/A+B(%)	3.5	4.4	56.1	25.2	14.9	1.6	5.0
1997년	국내(A)	381,246	6,569,641	119,263	108,663	474,965	1,964,818	9,618,596
	수입(B)	39,203	116,658	148,777	32,022	22,074	38,363	397,097
	B/A+B(%)	7.7	1.7	55.5	22.8	4.4	1.9	4.0
1998년	국내(A)	357,105	6,096,225	146,386	104,296	1,053,216	1,900,576	9,657,804
	수입(B)	43,050	68,567	223,493	31,408	21,518	30,928	418,964
	B/A+B(%)	10.8	1.0	60.4	23.1	2.0	1.6	4.2
1999년	국내(A)	358,840	5,779,451	120,185	103,236	1,399,738	2,048,723	9,810,173
	수입(B)	51,317	40,552	158,318	27,644	41,547	36,335	355,713
	B/A+B(%)	12.5	0.7	56.8	21.1	2.9	1.7	3.5

13.6%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청주는 10.4%, 10.8%로 3위를 기록하였다. 소주와 리큐르류, 과일주류는 전체 주류소비량이 감소추세인데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4-6위를 차지하였다. 위스키류의 경우는 주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1.6%, 1.7%로 1989년에 비해 약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6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편 1998년 기준으로 세계각국의 1인당 주류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등의 서유럽국가들과 체코,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상위 10위를 전부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은 각각 28위, 42위, 44위에 그쳤다. 이는 식사시 포도주나 맥주를 함께 먹는 식습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표 17 참조).

VI. 주류수입 현황

일본 주류수입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주류시장의 약 2.6-5.0%를 차지하고 있고 과일주, 위스키, 소주갑류 등이 수입주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표 18 참조). 주류별 수입주류의 시장추이를 보면 과일주가 전체 과일주시장의 약 50-60%, 위스키는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맥주와 기타주류는 수입량이 미미하여 전체 주류별 시장의 약 1%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 소주의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소주갑류는 1989년에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1.3%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3.5%, 1997년에는 7.7%, 199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넘

(표 19) 주류 수입 추이

구 분	1989년		1994년		1997년		1998년		1999년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수 량 (kl)	구성비 (%)	
청 주	27	0.01	135	0.03	201	0.05	235	0.06	130	0.04	
소 주	갑류	2,609	1.14	11,953	2.34	39,203	9.87	43,050	10.28	51,317	16.11
	을류	21	0.01	30	0.01	493	0.12	147	0.04	112	0.03
	계	2,630	1.15	11,983	2.40	39,696	10.00	43,197	10.31	51,429	14.46
맥 주	70,872	30.94	327,061	65.59	116,658	29.38	68,567	16.37	40,552	11.40	
과실주류	과실주	66,660	29.10	81,702	16.38	148,777	37.47	223,493	53.34	158,318	44.51
	감미과실주	2,156	0.94	2,888	0.58	3,369	0.85	3,368	0.80	3,170	0.89
	계	68,817	30.04	84,590	16.96	152,146	38.31	226,862	54.15	161,488	45.40
위스키류	위스키	53,809	23.49	42,391	8.50	32,022	8.06	31,408	7.50	27,644	7.77
	브랜드	10,858	4.74	9,826	1.97	7,708	1.94	4,919	1.17	5,048	1.42
	계	64,667	28.23	52,217	10.47	39,730	10.01	36,237	8.65	32,693	9.19
리큐르류	13,975	6.10	6,571	1.32	11,613	2.92	7,816	1.87	10,581	2.97	
잡 주	발포주	88	0.04	4,626	0.93	22,074	5.56	21,518	5.14	41,547	11.68
	기타	2,916	1.27	5,201	1.04	7,133	1.80	6,478	1.55	7,779	2.19
	계	3,004	1.31	9,828	1.97	29,209	7.36	27,996	6.68	49,327	13.87
기 타	5,081	2.22	6,323	1.26	7,844	1.97	8,054	1.91	9,513	2.67	
합 계	229,073	100.00	498,654	100.00	397,097	100.00	418,964	100.00	355,713	100.00	

어졌고 1999년에는 12.5%를 기록하여 일본 국내 소주업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소비량이 급증하여 일본주류업체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발포주는 발포주의 시장규모가 미미했던 1989년에는 수입품이 전체 발포주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소비량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는 1994년에는 일본 국내산 발포주가 대량 생산되면서 약 15%로 떨어졌고 1997년부터는 4% 이하로 수입품의 비중이 급감하였다.

수입주류시장에서 주류별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에는 맥주가 약 31%로 1위이고 과실주가 약 29%, 위스키가 약 23%, 브랜디가 약 5%, 리큐르류가 약 6%를 나타내고 있다(표 19 참조). 1997년에는 일본 주세율의 조정 등의 영향으로 과실주가 약 37%로 1위이고 맥주가 약 30%, 소주갑류가 약 10%, 위스키가 약 8%, 발포주가 약 6%의 순이었다. 1999년에는 과실주의 시장점유율이 더 늘어 약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한국산 소주와 발포주의 소비량 급증으로 인해 소주가 약 16%, 발포주가 약 12%로 2,3위를 기록하였다.

VII. 맺음말

현재 일본의 주류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아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1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침체의 영향으로 저가적인 발포주와 소주의 소비량이 급증하고 이에 반해 전통적으로 일본 주류시장의 3/2 정도를 차지하였던 맥주는 시장점유율이 50%로 떨어졌고 2위를 고수해오던 청주도 발포주에 2위 자리를 내어 주었으며 이어서 소주로부터도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와인의 폴리페놀효과의 영향

및 초저가 수입와인의 등장으로 와인시장도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이루어진 주세율의 급격한 변화도 주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로 등장하고 있다.

주류관련 주요사안들로는 알코올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알코올문제의원연맹』이 올해 6월 결정되었고, 알코올음료인 『츄하이』의 캔 디자인이 청량음료로 오인하기 쉽다는 이유로 주부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국세청 산하의 양조연구소가 4월 1일부터 독립행정법인 주류종합연구소로 개편되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음주금지법과 주세법의 개정 등에 따른 유통업체간의 마찰, 청주와 과실주 등의 釀造酒에 대한 増稅案, 발포주와 맥주의 課稅案 등의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주류산업의 개괄적인 분석이 일본 주류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주류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일본 국세청, 『酒のしおり』, 2001. 2.
2. 일본 국세청, 『酒のしおり』, 2000. 2.
3. 『酒類食品統計月報』, 2001. 5.
4. 『酒類食品統計月報』, 2001. 1.
5. 『酒類食品統計月報』, 2000. 1.
6. 『Beverage Japan』, 2001. 4.
7. <http://www.nta.go.jp/>
8. <http://www.nrib.go.jp/>
9. <http://www.japansake.or.jp/>
10. <http://www.winery.or.jp/>
11. <http://www.brewers.or.jp/>
12. <http://www.shochu.or.jp/>
13. <http://www.happoshu.com/>

14. <http://www.tama.or.jp/>

15. <http://www.ryutukikaku.co.jp/>

16. <http://homepage2.nifty.com/jokai/>

17. <http://www.jcr.co.jp/>

18. <http://www.houko.com/00/01/S28/006.HTM>

19. <http://www.kalia.or.kr/>

覺人之詐, 不形於言. 受人之侮, 不動於色. 此中有無窮意味, 亦有無窮受用.

남이 나를 속임을 깨닫고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고서도 낯빛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무한한 뜻이 있으며, 또한 무한한 활동이 있느니라.

- 채근담 -